

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4. 26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4. 26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5. 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감사실장 이상문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의 제도적 수용장치 마련이 필요하고

○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1천 명 이상으로 정함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없음	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제326호
의결년월일	2000. 5. 3 (제78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6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의 제도적 수용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
-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1천 명 이상으로 정함

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천명 이상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